

- 대구광역시달서구 신당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 제 안 설 명 서

2024. 9.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체육청소년과]

# 제 안 설 명 서

설 명 자: 체육청소년과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신당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남부교육지원청의 (구)신당중학교 시설 사용허가에 따라,
- (구)신당중학교 내 체육시설(신당체육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을 공개모집하여 수탁하고자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달서구신당체육센터의 시설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당체육센터는 달서구 서당로30, (구)신당중학교 내 체육관이며 허가 받은 시설 규모는 실내체육관 1개소(연면적 801.59㎡)입니다.
  - 일부 시설 사용을 위해 남부교육지원청과 달서구청 간 상호 조정하여 2024. 4. 18.자로부터 5년간 무상 사용을 허가 받았습니다.
  - 주요 사업은 체육관의 시설을 활용 하여 배드민턴, 프리테니스, 배구 등 동호인에게 시설 임대 및 GX룸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향후 계획과 수탁자 선정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당체육센터의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 11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 2024년 10월 적격심사를 위한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체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신당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신당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2024. 9.

제출자: 달서구청장  
(체육청소년과장)

## 1. 제안이유

- (구)신당중학교 내 체육시설(신당체육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을 공개모집을 위해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신당체육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5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제7조, 제9조, 제16조
- 「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

####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신당체육센터」는 지역주민들에게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시설물을 활용하여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건강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맞춤형 체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따라서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사무의 경우 단순 시설관리 능력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라. 위탁사무 내용

- 신당체육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 기타 구청장이 체육시설 사용 및 운영에 필요로 하는 사항 등

#### 마. 위탁시설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규모	운영방식	비고
신당체육센터	서당로 30 (신당동 1846-1)	1층(445.65㎡) 2층(803.48㎡) 3층(35㎡)	민간위탁	(구)신당중학교 (폐교)

바. 위탁기간: 계약체결일(2024년 11월 예정)로부터 3년

사.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사·선정

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체육분야 전문가(대학교수) 자문

- 민간이 가진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문성과 후원금,자체 수익금 등 다양한 재원조달을 통한 운영의 효율성과 경영의 전문성
- 달서구 관내 체육센터의 운영 통일성과 형평성을 고려

### 3. 참고사항

- 신당체육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 붙임1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의견: 붙임2
- 관계법령: 붙임3
  - 「지방자치법」 제11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5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제7조, 제9조, 제16조
  - 「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

- (구)신당중학교 내 신당체육센터 -

## 민간위탁 추진 계획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구)신당중학교 시설 사용 허가에 따른 (구)신당중학교 내 체육시설(신당체육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함

### I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5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제7조, 제9조, 제16조
- 「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

### II 추진방향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으로 위탁사업의 투명성 확보
- 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공신력 등을 고려하여 수탁자 선정
- 공익성과 효율성 제고로 공공체육시설 기능 강화
- 지역 일자리창출 방안과 연계하여 민간위탁 추진

### III 위탁개요

- 대상시설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주요시설)	비고
신당체육센터	달서구 서당로 30 (신당동 1846-1)	지상 3층, 연면적 801.59㎡ (다용도강좌실, 탁구장 등)	(구)신당중학교(폐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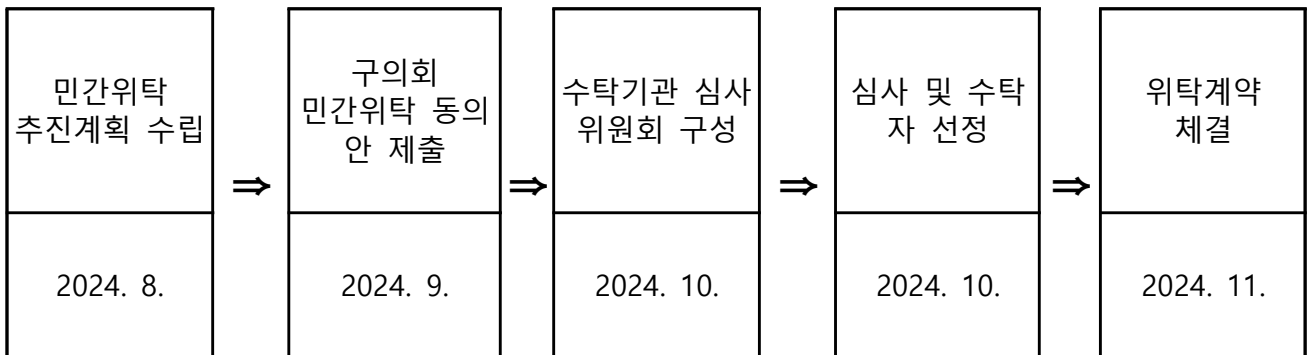
## ○ 위탁사무

-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시행
- 체육시설 유지 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 체육시설 이용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등
- 그 밖에 공공체육시설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기타 구청장이 체육시설 사용 및 운영에 필요로 하는 사항 등

○ 위탁기간: 계약체결일(2024. 11월 예정) ~ 2027. 11. 30.

○ 수탁자 선정: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사·선정

### ※ 업무추진 절차



## IV 세부 추진계획

### 1. 민간위탁 의회 사전 동의

- 기 간: 2024. 9. 24.~10. 2.(제 307회 임시회)
- 내 용
  - 민간위탁에 따른 의회 사전 동의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위탁사무 내용
  - 위탁시설개요, 위탁기간, 위탁자 선정 방법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위탁사무의 성과평가 등

## 2. 수탁기관 공모

- 공고기간: 2024. 10. 3.~10. 16.(14일)
  - ※ 재공고: 2024. 10. 17.~10. 22.(6일) (신청이 없을 시)
-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내용: 위탁시설 현황, 위탁내용, 응모자격 및 운영조건, 공고 및 접수기간, 수탁자 선정 및 발표 등
- 접수기간: 2024. 10. 14.~10. 16.(3일)
  - ※ 재공고시 접수기간: 2024. 10. 21.~10. 22.(2일)
- 응모자격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된 사무소나 사업자 등록이 된 법인 또는 거주하는 개인
  -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이 상근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 접수장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체육청소년과(8층)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제출서류: '붙임 1' 공고문(안) 참조

## 3.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

- 구성시기: 2024. 10월 중
- 위원구성: 7명(관계 공무원, 구의원, 외부 전문가 등)
  - 공무원: 2명(기획전략실장, 체육청소년과장)
  - 위촉직: 5명(구의원 1, 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4)
  - 신청접수 마감 후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 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촉방법: '붙임 5' 승낙서 징구로 위촉 같음
- 위원임기: 심사종료 후 자동 해촉

#### 4. 심사 및 수탁자 선정

- 심사일시: 2024. 10월 중
- 심사장소: 구청 회의실
- 참석대상: 심사위원(7명), 위탁운영 신청자(대표 등)
- 심사안건: 체육시설 수탁자 선정
- 심사내용: 4개 부문, 10개 항목

심사 부문	심사 항목	배점
신청자(기관·단체) 적격성	정관 등 설립목적과 체육시설 운영과의 적합성	20점
	신청기관의 공신력, 지역사회기여도, 재정건전성 등	
사업운영실적	최근 3년간 체육사업 운영실적	20점
	최근 3년간 관련 공모사업 수행 실적, 수상 실적	
체육시설 운영계획	운영방침 및 사업목표의 적정성	40점
	운영계획의 다양성, 구체성, 적합성, 이행가능성	
	수입·지출 계획의 적정성	
체육시설 운영능력 (전문성)	조직구성 및 전문인력 확보현황	20점
	유사시설 운영경험 및 장비 보유현황	
	운영의지 및 비전	

#### V **향후계획**

- 수탁자 선정
  -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점수 합산 평균
  - 신청기관이 2개 이상: 평점이 높은 기관으로 선정
  - 신청기관이 1개: 평점 70점 이상시 선정, 70점 미만시 재공모
- 수탁자 선정 통보: 선정기관 개별 통보
- 위탁계약 체결: 2024. 11월 (예정)

## 붙임 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의견

### □ 전문가(박영호 계명대학교 사회체육학과 교수) 의견

검토기준	검 토 내 용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육시설 운영은 최근 민간 위탁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추세이며 정규직 전환 문제 등 인력 운용의 어려움, 운영비용 부담 가중, 전문성 저하라는 측면을 생각할 때 구에서 직영하는 방식 외 여러가지 운영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됨.</li> <li>●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1항제3호(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됨</li> <li>●민간위탁을 통하여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통된 기준과 적용으로 달서구 관내 체육센터 간의 통일성과 높은 수준의 교육 전문성을 확보</li> </ul>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달서구 체육시설 관련 조례 및 규정에 따라 공통된 운영되는 기준을 반영한다면 서비스 제공의 공공성과 안정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li> </ul>
3. 경제적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 위탁 방식은 후원금, 지원금, 자체 수익금 등 다양한 재원 조달로 구 재정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인적, 물적 네트워크 활용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li> </ul>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영법인의 축적된 전문성과 시설 운영 경험뿐만 아니라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확보가 용이한 점에 비춰볼 때, 전문지식과 기술의 활용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됨.</li> </ul>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객관적이고 적극적 성과 측정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지만 매년 시행하는 회계검사 및 위탁 기간 만료를 앞두고 성과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성과측정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li> </ul>

###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②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90일 전까지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에 의해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11.)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재계약 시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또는 감사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탁기관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가 끝나면 해당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밖에 법률 전문가 등 구청장이 위원회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수탁시설의 향후 운영계획
2. 대표자 및 상근근무자의 전문성
3. 위탁 재산의 관리·운영 능력
4. 제8조 수탁기관 선정기준의 충족 여부
5.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대한 사항과 위원의 제척 사유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3개월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14조(관리·운영의 위탁)

-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다
- ③ 체육시설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며,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발전·생활체육 활성화·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 운영 수탁자에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